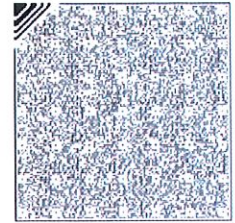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외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 준수(재공지)

1. 부산지원-3159('23.5.26.) 호와 관련입니다.
2.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항만국검색)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할 경우, 입항 48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항만국검색 대상선박에 대한 입항신고를 업계입장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운영(행정지시)하고 있음에도 ①입항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관련 규정에 따른 입항신고를 시간내 하지 않아 같은 법 제33(벌칙)\*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시(2014.1.28/원양산업과) >

대상 선박	신고 시점	비고
러시아극동지역, 중국, 일본, 대만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여객선, 산적화물선	입항 24시간 전 → 출항전	미끼용(bait) 수산물도 입항신고 대상임
그 외 해외어획물 적재 입항선박	입항 24시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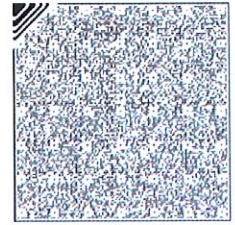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이와 관련, 해외어획물적재선박 입항신고 의무규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재공지하오니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시길 바라며, 참고로 여객선, 컨테이너선박, 산적화물선이라도 아래 해당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반드시 해외어획물적재선박 입항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원 홈페이지(www.nfqs.go.kr) 검역검사-국제어업관리-입항신고 및 항만국검색 참조

- 가. 국제수산기구가 어획증명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여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다랑어류, 이빨고기류 등을 적재한 경우 각 국제수산기구의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
- 나. 외국과 체결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종을 적재한 경우
- 북서태평양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게류(Crab), 새우류(Shrimp)와 그 가공품이며,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러시아 수산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 다. 해외수역에서 포획·채취한 공치, 긴가이석태 또는 영상가이석태를 적재한 경우
- 해당 어종을 포획·채취한 선박의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다만, 해당 선박의 총톤수가 20톤 미만인 경우 간편 어획증명서)

끝.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장



수신자 (사)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산지회, (사)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 부산국제해운대리점

주무관 김윤정 지원장 2024. 2. 6.  
양호섭

협조자 주무관 하건호

시행 부산지원-906 (2024. 2. 6.) 접수

우 4894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30번길 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  
원 / http://www.nfqs.go.kr

전화번호 0051-602-6035 팩스번호 051-602-6088 / yun301@korea.kr / 대국민 공개